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5일

## 3. 제안사유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개정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‘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기준’ 개정

## 4. 주요내용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‘미세먼지 (PM-2.5)’ 를 ‘초미세먼지(PM-2.5)’ 로 변경
-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발령 및 해제기준에 연동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### 가. 제출배경

- 2019. 2월 개정된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과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,
- 상위법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례의 “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 기준” 을 상위법과 연동토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‘미세먼지 (PM-2.5)’ 를 ‘초미세먼지(PM-2.5)’ 로 변경함.

조례 현행	조례 개정안
제2조(정의)----- 1. ----- 가.----- 나. 미세먼지(PM-2.5) : -----	제2조(정의)----- 1. ----- 가.----- 나. <u>초미세먼지</u> (PM-2.5) : -----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미세먼지(PM-2.5)를 초미세먼지 (PM-2.5)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[참고1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

제1조의3(대기오염도 예측·발표 대상 등)

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·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.

1. 미세먼지(PM-10)
2. 초미세먼지(PM-2.5)
3. 오존(O3)

- 별표1의 미세먼지(PM-2.5)도 초미세먼지(PM-2.5)로 변경해야 하며, 향후 이와 같이 상위법의 용어 및 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별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별표(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)를 상위법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의 별표7과 연동토록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,

- 또한,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주의보, 경보의 발령해제 기준 PM-2.5의 평균농도가 기존 조례 보다 낮아 도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[참고2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별표1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(제4조 관련)			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<개정 2019.2.13.>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			
대상 물질	경보 단계	발령기준	해제기준	대상 물질	경보 단계	발령기준	해제기준
미세먼지 (PM-2.5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90 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오염 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50 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미만인 때	초미세먼지 (PM-2.5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차 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75 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차 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35 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180 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오염 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90 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	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차 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150 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차 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<b>75 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b>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의 변경을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연동하여 기준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, 타당하다고 판단됨.